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The evolving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and related social movements

강현수**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처음 주장한 이래, 이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이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이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UN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국가적 차원이나 개별 도시 차원에서 도시권 개념을 구현한 법이나 헌장을 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 운동 및 도시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내용과, 후속 이론 연구, 이와 연관된 인권 발달의 역사, 도시권 개념에 근거한 실천 운동의 흐름 및 성과들을 살펴본다.

주요어: 도시권(都市權), 앙리 르페브르, 인권, 시민권, 도시정치

1. 머리말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가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 the right to the city)’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래, 이 개념은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생활이나, 도시계획

* 이 글은 2009년 11월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본인의 논문 「도시권의 개념 및 도시권 확보 운동의 전개과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hskang@joongbu.ac.kr)

및 도시행정에 대한 더욱 많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¹⁾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8년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에서 널리 사용된 인기 구호 중 하나였으며, 이후에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사회운동의 지향점이 되었다. 도시권 개념은 도시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요구와 권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도시 공간이나 도시 생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낳았고, 국가 중심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재구성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등 세계 각국의 도시 운동과 도시 정치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르페브르가 언급한 도시권 개념은 철학적, 사변적 개념이면서도 그 속에 사회변혁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회운동의 구호로 유용했으나,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다. 그렇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와 관련된 실천 활동에서 도시권 개념에 입각하여 현실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됨과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이 개념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구체화 정교화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는 도시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집합적 권리로서 도시권을 도입한 도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 여러 도시에서 도시권 개념에 바탕을 둔 도시 현장과 도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 같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도시권 연구와 함께, 이 개념에 입각한 도시 정책들을 소개 보급하고 있으며, 도시권 세계 현장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1) 이 글의 주제인 the right to the cit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ousing)를 주거권으로 약칭하는 것처럼,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도시권(都市權)’으로 약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권으로 약칭해 사용하지만, 약간 의미가 다른 ‘도시에서의 권리(the right in the city)’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 그대로 사용했다. 또 도시의 세력권을 뜻하는 도시권(都市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 권리’라고 약칭했다.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권은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학계나 도시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아직 이 개념이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 및 후속 이론 연구, 그리고 도시권과 관련된 실천 운동 및 그 성과들을 소개하려는데 있다. 덧붙여 실천적 차원에서 도시권 개념의 유용성과 의의, 우리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먼저 제2장에서는 전반적인 인권의 역사와 함께 도시권과 관련성이 있는 유엔의 사회권 조약 및 주거권 증진 노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도시권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르페브르의 도시권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르페브르 이후 도시권 개념의 정교화와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프리드만, 하비, 맥켄, 퍼셀, 미첼 등 후속 연구자들의 논의를 검토한다. 다음 제5장에서는 도시권 개념을 도시 현실에 적용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권능부여와 각종 도시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했던 도시사회운동의 흐름과 함께 그 성과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도시권 개념의 유용성과 의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2. 인권 개념의 발전과 사회권

1) 현대 인권 개념의 등장과 유엔인권선언²⁾

인권(Human Right)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 경제적 변화, 사회 운동의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 서구에서 근

2) 이 절의 내용인 인권 개념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는 Ishay(조효제 옮김, 2005), 류은숙(2009), Hunt(전진성 옮김, 2009)를 주로 참조했다.

대적 인권 개념의 출발로 간주되는 영국의 1215년 마그나카르타나 17세기의 권리청원·권리장전 등은 귀족이나 신봉특권계급이 자신들의 권리를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서, 일반 민중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후 홉스, 로크, 볼테르, 루소 등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주창하기 시작하고, 18세기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보편적 인권이 공식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가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이 정부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사상의 자유와 함께 자유·소유권·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이같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선언된 내용은 당시 국왕이나 귀족이 지배하던 그 시대 기준에서 볼 때는 매우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인권의 실질적 수혜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과 노예,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계급은 이 당시의 인권 개념에서 실제로는 배제된 집단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와 노동운동의 성과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물질적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미국의 노예해방, 프랑스 파리코뮌의 경험, 여성 참정권 운동, 어린이 청소년 권리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과 투쟁의 결과, 재산을 보유한 소수 성인남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항상 인권의 확대 발전 쪽으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고 여러 번의 반동과 퇴보의 시기를 겪기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두와 제국주의, 파시즘의 등장으로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참상을 겪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전쟁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담보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이 모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창설된 유엔은 인권 존중이 시대적 국제적 과제를 선언했다. 1945년 제정된 유엔헌장 제1조에서는 국제 평화 및 안전과 함께, 인종·성별·언어·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유엔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서, 인권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2) 사회권과 자유권

프랑스 법학자 바삭(Vasak)은 인권을 시대적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한다. 제1세대 인권은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제2세대 인권은 평등을 강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며, 제3세대 인권은 박애와 형제애를 강조하는 연대권이다. 제3세대 인권에는 환경권, 평화권,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 등이 포함된다(박병도, 2006: 162~167). 이샤이(Ishay)의 해석을 부연한다면, 제1세대 권리는 계몽주의 시대에 쟁취했던 시민적 자유 및 기타 자유권이고, 제2세대 권리는 산업혁명 시기에 쟁취했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상징하고, 제3세대 권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식민지 이후 고취되었던 공동체적 유대 또는 민족적 연대를 뜻한다.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에는 이 세 세대의 권리가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다(Ishay, 조효제 옮김, 2005: 37). 간단히 요약한다면, 제1세대 인권은 자유주의적 인권관이고, 제2세대 인권은 사회주의적 인권관이며, 제3세대 인권은 문화주의적 인권관 혹은 개발도상국 인권관이라 할 수 있다(Ishay, 조효제 옮김, 2005: 46~47).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권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통칭 사회권)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권의 대표 소련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통칭 자유권)를 강조하는 자본주의권의 대표 미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컸다(Ishay, 조효제 옮김, 2005: 369 ~370). 결국 협상과 타협의 결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공표되었지만, 이 선언이 유엔총회 투표에 부쳐졌을 때, 당시 사회주의국가 6개국은 사회권이 자유권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선언의 내용이 개인적이며, 파시즘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에는 자유권이 19개조인 반면, 사회권은 6개조에 불과하다(박래균, 2008: 143).

3) 유엔 사회권 조약과 주거권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이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점차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인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이어졌다. 20년 가까운 오랜 논쟁 끝에 1966년 유엔에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춘 인권에 관한 조약 두 개가 채택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통칭 자유권 조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통칭 사회권 조약)이 그것이다. 10년 후인 1976년부터 발효된 이 두 조약은 여기에 가입한 나라들이 여기에 규정된 권리들을 자국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 두 조약에 사형제 같은 일부 선택사항을 유보한 채 가입했다. 한편 유엔은 이 두 조약 이외에도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인종차별철폐조약(ICERD),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고문방지조약(CAT), 아동권리조약(CRC), 이주노동자권리조약(MWC) 등 국제인권조약 등 다양한 국제적 인권 기준이 되는 조약들을 제정했다.³⁾

이 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사회권 조약)」은

정당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권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적 자유와 과학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⁴⁾

한편 유엔은 이러한 사회권 조약 내용 중 특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시하여 유엔 산하에 인간정주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Habitat)를 설립하고, 1976년 밴쿠버 제1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와, 1996년 이스탄불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개최했다. 유엔은 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거는 기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후에도 유엔은 2001년 「새천년 도시 및 인간정주선언」⁵⁾ 등 주거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를 통해 도시 권리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3.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널리 알린 사람은 프랑스의

-
- 3)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유엔인권조약 대부분에 가입했지만, 이주노동자권리조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가입한 조약 중 일부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CPD-OP),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등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내부자료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참조). 우리나라가 이처럼 일부 국제인권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미 가입한 조약의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국내의 평가를 받고 있다.
 - 4) 사회권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ited Nations(2005) 및 국가인권위원회(2004), 류은숙(1995, 2009), 한상희(2006) 참조.
 - 5) 영어명은 Declaration on Cities and Other Human Settlements in the New Millennium이다.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이다. 르페브르는 젊었을 때는 주로 농촌과 일상성에 관한 많은 글을 썼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 도시 연구에 몰두하여 도시에 관한 많은 역작을 남겼다.⁶⁾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초판 출간연도인 1867년부터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967년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 The Right to the City*)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별로 두껍지 않은 이 책은 1년 후인 1968년 출간되었다. 이 책이 도시에 초점을 맞춘 그의 첫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 『도시혁명』, 1973년 『공간과 정치』를 잇따라 집필했고, 1974년 도시와 공간에 관련된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공간의 생산』을 완성한다.⁷⁾

『도시에 대한 권리』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했지만,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에 담긴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대중적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1968년 프랑스 주요 도시를 휩쓴 사회운동의 핵심 구호가 되기도 했다. 이 책 및 이후 도시 관련 저작들에서 르페브르는 현대 자본주의 도시 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항하는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표출된 핵심 개념이다.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권리들보다 상위 형태의 권리이며, 작품의 권리, 참여의 권리, 전유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제부터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6) 르페브르의 도시 연구 전반을 쉽게 소개한 것으로 Merrifield(남청수 외 옮김, 2005) 참조. 이 책은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시 연구에 대해서도 쉽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편 르페브르의 수많은 저작 중 도시 관련 저작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 국내 연구로는 박영민(1997) 및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르페브르 특집호에 실린 로브쉴즈(조명래 옮김, 2000), 노대명(2000), 김남주(2000)의 연구, 그리고 장세룡(2006)의 연구가 있다.

7)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해 쓴 위 책들의 프랑스어 원판 및 영어 번역판에 대해서는 이 글 뒤에 수록한 참고문헌 참조.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간단히 살펴보자.

1) 작품(oeuvre)으로서의 도시와 작품에 대한 권리

우선 르페브르는 도시가 농촌의 특징인 개인성, 동질성, 고립성과는 대조적인 공공성, 이질성, 만남과 교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도시는 새로운 이주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질성을 가지게 된다. 도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서 변영하는 곳이다.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와 만남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도시는 다양한 도시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일종의 집합적 ‘작품(oeuvre)’이다.⁸⁾ 작품(oeuvre)으로서의 도시는 도시거주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와 연관된다.

도시는 산업화보다 먼저 존재했다. …… 가장 뛰어난 도시 창조물,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생활의 작품(oeuvre)은 산업화의 그것보다 시대를 앞서간다.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품(products)이라기보다 작품(oeuvre)이기 때문이다. …… 도시는 그 자체가 작품이다. 즉 화폐와 상업, 교환과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사용가치이고 제품은 교환가치이다. 도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즉 거리와 광장, 건축물, 기념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축제(la Fête)이다(Lefebvre, 1996: 65~66).⁹⁾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도시로 접어들면서,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8) 프랑스어의 oeuvre 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공들여 만든 일생에 걸친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9) E. Kofman과 E. Lebas가 1996년에 함께 편집·번역한 *Writings on Cities*(Oxford, Blackwell Publishing)에는 Lefebvre가 1968년에 쓴 *Le droit à la ville*(*The Right to the City*) 및 1973년에 쓴 *Espace et politique*(*Space and Politics*)의 서문 및 일부 내용과 기타 몇 가지 짧은 논문들이 번역되어 있다.

중시되고 그로 인해 이 집합적 작품이 소외되고 있다. 도시를 차이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 지배계급과 경제적 이해에 의해 도시는 더 이상 참여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거주자들은 다시 도시라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권리는 객관적 필요, 도시가 만남을 추구하도록, 또 시민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창조적 활동을 위한 필요, 작품(oeuvre)을 위한 필요와 관계된다 (단지 제품이나 소비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 상징, 상상, 놀이(play)를 위한 필요와 관련된다(Lefebvre, 1991: 147).

2) 전유의 권리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전유의 권리이다. 르페브르가 말한 전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마르크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전유의 권리는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할 권리이다. 도시 공간을 재산(property), 즉 시장에서 교환될 상품으로 보는 개념은 전유의 권리와 대립된다(Purcell, 2003: 577~578). 르페브르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명백히 그 자체가 다음 권리들—즉 자유에 대한 권리, 사회화 속에서 개인화에 대한 권리, 거주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보다 상위 형태의 권리이다. 작품(oeuvre)에 대한 권리, 참여와 전유(분명히 소유권과 구분된다)의 권리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Lefebvre, 1996: 173~174).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과거와 같은 고대 도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 부활된 도시 중심성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Lefebvre, 1996: 179).

3) 참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역시 도시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지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치 생활, 도시 관리 및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Dikeç, 2001: 1790). 르페브르는 참여의 권리를 통해 도시 생활이 변혁되고, 나아가 사회가 변혁되고, 시간과 공간도 변혁된다고 보았다.

사이버 권리에 직면해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외침이나 요구 같은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방문하는 권리거나, 전통 도시로 돌아가자는 권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시 생활을 변혁하고 부활시키는 권리로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Lefebvre, 1996: 158).

이러한 도시 권리는 위의 누군가로부터 각 개인에게 아래로 분배되는 권리가 아니라, 도시거주자들이 능동적이고 집합적으로 도시 정치에 관여하면서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정치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권리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권은 도시 공간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간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정치 공간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어진 도시 시민의 권리는 단지 법적 지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일체감, 즉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Dikeç, 2001: 1790).

참여의 권리를 통해 르페브르는 ‘도시에서의 특정 권리(specific rights in city)’를 주장하기보다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right to the city as a whole)’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변화를 위한 매개 개념으로 이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시민이 그들의 필요를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도시 거주자는 도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권을 전유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반드시 참여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허용해야만 한다.

4)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

1970년대 후반부터 르페브르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자주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에서의 권리와 시민권(citizenship)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다. 르페브르가 보기에 시민권 개념은 거의 200여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투표할 권리에 머물러 왔다. 르페브르는 시민권은 차별적인 사회생활, 더욱 직접적인 민주주의, 추상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간의 토대 위에 있는 시민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Kofman & Lebas, 1996: 33).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이후 르페브르는 정보기술이 시간과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대 대도시에서는 국외 이주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때문에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세계화되어 가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차이에 대한 권리(right to difference)와 정보에 대한 권리가 도시권에 보완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르페브르의 차이에 대한 권리는 차이 그 자체보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different)를 강조한 것이다. 르페브르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란 “반드시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 범주 속으로 강제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라고 했다. 즉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인 것이다(Dikeç, 2001: 1790).

차이는 르페브르의 도시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추상 공간(abstract space)’의 헤게 모니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저항하여 추상 공간이 전체 지구를 정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별화된 공간(differentiated space)’을 생산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차이에 대한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의해 보완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거주자(citadin)와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user)로서의 시민의 더욱 실천적인 권리로 수정되고 구체화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도시 영역에서 그들의 활동들의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보증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산되거나 계토에 잠금되는 대신, (노동자, 이주민, 주변인, 특권층까지도 포함한 모두를 위해) 도시 중심부, 즉 특권적 장소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Lefebvre, 1991, Kofman & Lebas, 1996: 34에서 재인용).

5) 도시거주자의 권리

도시에 대한 권리는 세계성(globality)을 언급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를 지향하는 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자연적 권리도 아니고, 계약적 권리도 아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시민과 도시 거주자의 권리를, 그리고(사회관계의 토대 위에서) 그들이 구성하는 집단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Lefebvre, 1996: 194).

10)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1(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 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citizenship)과 구별되는 도시거주자(citadin)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다.¹¹⁾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은 1648년 베스트팔렌(Westphalian)조약으로 만들어진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형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¹²⁾ 이때부터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영토 단위 안에 사는 국민에게 한정되어 부여되었다. 그런데 르페브르는 정치 공동체의 소속감은 도시의 거주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도시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근대적 시민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6)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또한 르페브르는 도시 중심성, 즉 도심의 회복을 강조한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시 중심부의 재개발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처럼 사람들이 도시 중심부로부터 배제되고, 기능별, 계층별로 도시 공간이 격리 단절되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만남의 장소로서 도시 중심부의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적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적 개입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도시 공간의 근본적 특성 혹은 특징에 의존한다. 즉 중심성에 의존한다. …… 중심이 없다면, 공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

11) 프랑스어 citadin은 도시거주자(city dweller)를 의미한다.

12) 1648년 유럽에서는 30여 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배타적인 지정학적 영토 내부에서 국민에게 조세와 법률을 부과할 정당성을 부여받은 근대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박배균, 2006: 4) 참조.

면, 모든 대상과 주체들의 실제적이고 가능한 만남이 없다면, 도시적 실체는 없다고 확언한다. …… 도시를 집단, 계급, 개인들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또한 그들을 문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차별적, 격리적 조직에 의해, 도시 실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스스로 허락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 도시에 대한 권리는 만나고, 모임 권리를 규정한다. 장소와 사물은 어떤 필요에, 어떤 기능에 응답해야만 한다. …… 즉 사회생활을 위한 필요, 놀 필요와 기능, 공간의 상징적 기능에 응답해야만 한다(Lefebvre, 1996: 195).

르페브르가 중심성(centrality)을 강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도시의 중심부, 즉 도심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도시 거주자가 도시 의사결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은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중심성의 권리는 의사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권리와 함께, 도시의 중심부를 물리적으로 점유하면서 살 권리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Purcell, 2003: 578). 중심부에서 배제되어 교외 지역이나 주변부로 쫓겨난 사람들에게 도시권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7) 르페브르의 이상도시: 파리코뮌

1871년의 파리코뮌은 르페브르가 도시와 관련하여 선호했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축제와 혁명적 정치 같은 것들이 구현되었던 공간이었다. 르페브르는 코뮌을 유사 이래 유일한 혁명적 도시주의의 실현이라고 여겼다. ‘코뮌 선언’¹³⁾은 이러한 것들의 기록이다. 르페브르는 코뮌을 ‘유사 이래 유일한 혁명적 도시주의의 실현’이라고 불렀다. 르페브르에 따

13) 파리코뮌선언(La Proclamation de la Commune)에서는 모든 프랑스인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는 코뮌의 절대적 자치를 선언하고 있다. 파리코뮌선언의 의의와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류은숙(2009: 86~94) 참조.

르면 파리 코뮌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변두리와 주변부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도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했던 힘과 자신들의 도시와 자신들이 빼앗겼던 작품(oeuvre)을 재탈환했다는 사실이다. 코뮌 지지자들은 그때까지의 문화 외 일상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자유와 자결을 요구했으며, 부르주아 권력과 권위의 상징들을 파괴했다. 거리를 점거했으며 소리쳤고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르페브르는 코뮌이 도시 자체를 인간 현실의 표준과 규범으로 만들고자 한 거대하고 매우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했다(Merrifield, 남청수 외 옮김, 2005: 196).

8)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 혁명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유에 대한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이다. 참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유는 공간에 접근하고,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거주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거주에 대한 권리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사이비 권리, 또는 그저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함성과 요구 같은 것이다. 이런 투쟁을 통해 집단적 작품으로서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거주 양식, 새로운 삶의 양식이 발명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가 만드는 추상 공간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르페브르가 차별화된 공간이라고 부른 것을 생산하는 투쟁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 투쟁은 공간을 생산하는 권리에 대한 투쟁인 것이다(Mitchell, D., 2003: 28~29).

『공간의 생산』에서 르페브르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지 못하는 혁명은 그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다. 정말로 그것이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제도, 정치적 조직만 변화시킨다면, 혁명은 실패한다고 본 것이다. 르페브르는 교조적 스탈린

주의에 대해 거부했다. 그는 성숙된 개인의 차별화된 실천을 선호했다. 그리고 차별화된 실천은 차별적인 공간을 통해서, 개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서, ‘도시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Merrifield, 남청수 외 역, 2005: 167).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은 1970년대 프랑스 좌파들은 민주적 참여, 자주 관리, 도시 변화를 외쳤다. 이는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changer la ville, changer la vie - change the city, change life)”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은 연합하여 여러 지방자치체들을 장악했다. 1981년에는 사회당이 중앙정부를 장악했다. 그러나 집권 사회당은 교외 지역에 관심을 가졌고 르페브르가 강조한 도시 중심부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Kofman & Lebas, 1996: 35). 오히려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라틴아메리카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이곳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실천이 이루어졌다.

4. 르페브르 도시권의 의의와 후속 이론 연구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실천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사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구체화되고 명료한 실천적 지침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함의를 품고 있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실천 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많은 학자가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 영감을 받았다. 르페브르를 영미권에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한 데이비드 하비(Harvey, 1973, 2000, 2003, 2008)를 비롯해, 프리드만(Friedmann, 1987, 2002), 소자(Soja, 2000), 이신(Isin, 2000) 등이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002년 발간된 *GeoJournal* 제58권은 도시권에 대한 연구를 한데 모아 특집호를 구성하고 있다.¹⁴⁾ 이제부터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 대한 후속 이

론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리드만과 하비의 도시권에 대한 관심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및 지역계획 학자인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짧은 논문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주장할 때는 단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다(Friedmann, 1987: 138). 첫째는 억압적 국가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도시들의 barrios¹⁵⁾에서 도시로부터 혹은 생활을 위한 돈벌이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인민 권력의 놀라운 부활이며, 스스로의 권한 부여이며, 새로운 권리에 대한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프리드만은 이후 꾸준히 시민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그는 시민이 누려야 할 중요 권리로 발언할 권리(to voice), 서로 다를 권리(to difference), 번영할 권리(to human flourishing)를 강조했다(Douglass & Friedmann, 1998). 다른 글에서 그는 시민권의 세 가지 모델, 즉 전통적 개념인 ‘국가 중심적 시민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시민권’,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갖는 ‘반항적(insurgent) 시민권’을 제시한 후¹⁶⁾ 사회 행동에 대한 행동적 참여, 정치적 담론과 실천의 소통, 민주적 공간의 확장을 위해 반항적 시민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Friedmann, 2002: 71~86). 프리드만은 정치 문제에 직접 나서 행동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소수 활동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들의 일

14)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뒤의 참고문헌 참조.

15) 성당 앞 같은 공유 공간을 의미. 라틴계들이 모여 사는 저소득층 주거지를 뜻하기도 함.

16) 프리드만이 관심을 가진 반항적 시민권은 이른바 급진 민주주의적 내용을 담은 시민권으로 제임스 홀스톤(James Holston)과 샹탈 무페(Chantal Mouffe)의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상생활공간에 아주 큰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면 가급적 나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시민 사회가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Friedmann, 2002: 101~102).

하비는 그의 저작 『사회정의와 도시』를 통해 르페브르의 이론을 영미권에 소개한 선구자이다. 그는 2000년 쓴 『희망의 공간』에서 인권의 범위를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속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공간의 생산에 대한 권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Harvey, 2000: 86). 이어서 하비는 1948년 유엔인권선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분리되고, 사회권의 내용을 담은 유엔인권선언 22조에서 25조까지의 조항이 미국을 비롯해 유엔인권선언에 서명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¹⁷⁾ 하비는 이 조항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서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는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Harvey, 2000: 86~91).

하비는 이후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제목을 붙인 두 편의 짧은 논문을 통해 도시권 확보 투쟁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arvey, 2003, 2008). 하비가 보기에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접근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바라는 것을 좇아 도시를 변화시킬 권리까지 포함한다(Harvey, 2003: 939). 따라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가 지니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개인적 접근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도시 사회성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권리는 모든 인권 가운데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17)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제23조는 노동권을, 제24조는 휴식과 여가권을, 제25조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등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어머니와 어린이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 가슴 속의 희망을 좇아서 도시를 변화시키므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권리이다. 나아가 도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지배하는 집합적 권력의 작동에 달렸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권리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공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도시를 창조, 재창조하는 자유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권임에도 가장 무시되었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싶다(Harvey, 2008: 23).

하지만 최근의 강력한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신자유주의 윤리와, 집합적 형태의 행동에 대한 지지를 정치적으로 철회하는 지금의 세계에서, 자산 가치의 방어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하비는 분석한다. 이런 조건에서 도시 정체성, 시민권, 귀속 의식이라는 이상은 이미 신자유주의 윤리의 확산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자본주의 도시화는 그 지리적 규모를 계속 증대해 가면서 자본 잉여의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시 대중들에게 도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강탈했다. 대신 도시에 대한 권리가 사적 이해관계의 손에 넘어간다. 따라서 현재 인정받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소수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에게만 한정된 지극히 협소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결과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도시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 도시에 대한 집합적 권리를 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나서 일부 성과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사회운동은 도시의 위기로 인해 영향받는 수많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해결책을 이행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거나 단일한 목표 아래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Harvey, 2008: 39).

결국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치적 이상이자 투쟁의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이러한 여러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어야 한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배제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도시 통제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자본 잉여를 통제하는 새로운 양식의 도시화 과정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의지를 담보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민주화와, 광범위한 사회 운동의 구축이 불가피하다(Harvey, 2008: 40).

2) 도시권과 새로운 시민권

이처럼 프리드만, 하버를 포함한 소자, 이신 등 많은 학자가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대해 언급했지만, 난해한 르페브르의 저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심각하게 고려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Purcell, 2003: 576). 퍼셀(Purcell)은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민권의 대안을 만드는 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적 학자이다.

퍼셀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런데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언급한 여러 후속 연구들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르페브르 도시권 개념의 혁명적 함의를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도시권 개념이 현재 다양한 운동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 중 르페브르가 원래 의미한 도시권을 제대로 주장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운동에서 르페브르 도시권의 원래의 개념이 희석되었다고 본다(Purcell, 2003: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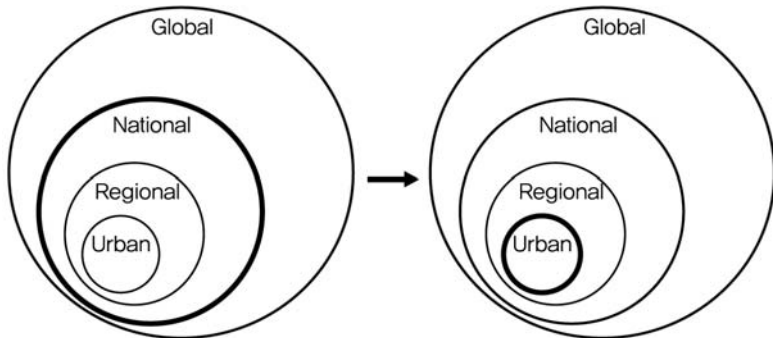
퍼셀은 범지구화 과정이 근대 국가에 기초했던 시민권 개념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국가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 정치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퍼셀은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라는 두 과정이 범지구적 재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 브레너(Brenner, 1999)의 논의를 따라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래 국민국가의 영토 단위로 분할된 시민권의 범위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시민권의 스케일 조정, 시민권의 재영역화, 그리고 시민권의 지향 조정으로 개념화했다(Purcell, 2003: 571~576).

시민권의 ‘스케일 조정(rescaling)’이란 국가 중심의 시민권 범위가 한편

으로는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적 범위로 확대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한 국가 내 하위 단위인 지역이나 도시 단위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권의 ‘재영역화 혹은 영역조정(territorialization)’이란 국가와 무관한 다양한 시민권 형태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권의 ‘지향 조정(reorientation)’이란 국가가 더 이상 우선권을 갖는 정치공동체가 아니며 국민은 모두 동일한 정체성과 귀속성을 갖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1>은 정치적 소속감이 이제 국가 헤게모니에서 도시 헤게모니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디켈(Dikeç) 역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개인적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사고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Dikeç, 2001). 한편 돈 미첼(Don Mitchell)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전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위자나 노숙자가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또 9·11 뉴욕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도시에서 공공 공간에 대한 감시와

<그림 1> 국가에서 도시로 정치적 소속감의 변화



현행 관계: 국가 헤게모니

도시 권리: 도시 헤게모니

출처: Purcell, 2002: 106.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이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Mitchell, D., 2003).

3) 도시권에 관한 국내 연구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시 권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 다행히 최근 국내 여성학계에서 ‘여성의 도시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받아들여, 국내에 도시권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이봉화·조영미, 2007; 이현재, 2008). 김용창은 2009년 초 비극적인 용산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비의 개념을 빌어 현대 도시에서 진행되는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제도에 대항하고 도시화 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시권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김용창, 2009).

5. 도시권 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도시사회 운동에서 실천 이념으로 활용되었다. 또 이러한 사회 운동의 성과가 국제적, 국가적, 도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 중 현실적 구속력을 가진 법의 형태로 실현된 것도 있고, 규범적 차원에서 적극적 권장이나 행동 지침 성격을 띠는 헌장 형태로 표현된 것도 있다. 또 각 도시의 도시 정책 속에 스며든 것도 있다. 이 장에서는 도시권과 관련된 실천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⁸⁾

18) 여기서 다룬 사례들은 UNESCO, UN-HABITAT(2009)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1) 브라질 도시법(City Statute) 제정 운동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무허가정착지의 확산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도시 빈곤층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활동가들은 무허가정착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운동의 철학과 사상으로 도시권 개념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념을 구속력을 갖춘 실정법 형태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오랜 사회운동과 정치적 압력을 통해 콜롬비아에서 1997년에, 브라질에서는 2001년에 도시권 개념을 명시한 법률이 통과되었다(Fernandes, 2007: 204~208). 여기에서는 도시권을 법제화한 브라질의 「도시법」 제정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

제3세계 도시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농촌을 떠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도시 주변의 유희지를 무단 점유한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환경을 개척했다. 사유재산권 개념에 얽매어 있던 브라질의 기존 법체계는 이런 현실 상황의 개선에 무력했고, 한쪽에서 불안정한 주거형태인 무허가 정착촌이 확산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토지 독점과 투기가 만연했다. 부채지주가 소유한 방대한 토지들이 미활용 혹은 저활용 상태로 방치되었고, 소수 상류층은 자신들만의 폐쇄된 공간(gated community)을 따로 조성했다.

1964년 쿠데타로 집권한 브라질 군사정부는 도시공간의 근대적 정비를 명분으로 무허가 정착촌을 강제 철거하고 이곳의 주민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철거만 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1970년대 말부터 자조주택의 증·개축을 지원하거나 불량주택을 양성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식 주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비공식 주택시장에 이미 존재해 있는 자조주

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적 정책으로 자리 잡아갔다.¹⁹⁾

오랜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1985년 브라질에서는 21년간 통치했던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빈민운동 및 주거운동 진영, 전문가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힘을 합쳐, 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인 「대중적 도시 개혁안(the Popular Urban Reform Amendment)」을 제출했다. 이 운동의 성과로 1988년 제정된 신헌법 제182조와 제183조에 도시권 및 도시권을 보증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헌법에 규정된 이 두 조항의 핵심 내용은 주거권과 관련하여 usucapiao²⁰⁾ 권리, 즉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임차권 형태로 실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또 사유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도시관리의 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헌법에 보장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무허가 정착촌 주민들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주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혁신세력이 집권한 일부 대도시 지방정부에서는 무허가 정착촌에 대한 규제나 강제철거 대신 이를 합법화, 양성화하는 여러 혁신적 정책 대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Fernandes, 2007: 214; 장세훈, 1999: 126). 이 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생산한 곳이 ‘참여예산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브라질의 다양한 도시 및 주거운동 집단들은 ‘국가 도시개혁포럼(the National Urban Reform Forum)’을 결성하여 헌법 내용을 구체화할 「도시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갔다. 10여 년 이상의 오랜 정치적

19) 브라질의 도시화 과정 및 정치적 변화, 그리고 주택 정책의 흐름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국내 문헌으로는 장세훈(1999) 참조.

20) usucapiao는 역소유권(adverse possession), 즉 오랜 기간 점유한 사람이 법적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브라질의 1988년 신헌법에서는 5년 이상 250m² 이하의 소규모 민유지를 평화롭게 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토지를 무단 점유한 정착지 주민을 범법자로 간주하보다는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점유 이용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장세훈, 1999: 126).

협상 끝에 2001년 마침내 「도시법(City Statute)」이라고 이름 붙여진 연방정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1988년 헌법에 추상적인 형태로 도입된 내용을 법률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비록 처음 제안된 내용 중 일부 급진적 조항을 대통령이 비토하여 삭제되어 버린 한계는 있지만, 도시권을 명시적인 집합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시 개발과 관리 과정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브라질 「도시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념적 차원으로 도시 및 도시 토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헌법 원칙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도시 정부가 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수단과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다. 셋째, 주민 참여를 포함한 도시의 민주적 관리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다. 넷째, 무허가 정착촌의 양성화를 위한 수단들을 규정한 내용이다. 브라질의 「도시법」의 구성 체계는 다음 <표 1>과 같다.²¹⁾

<표 1> 브라질의 「도시법」 체계

제1장 일반 지침
제2장 도시 정책 수단
제1절. 수단 일반
제2절. 저활용·미활용 되는 도시토지의 분할·건축·강제 이용
제3절.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재산세
제4절. 전유를 위한 공채
제5절. 도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통한 소유권 취득(usucapion rights)
제6절. 주거 목적을 위한 특별한 사용 허가(대통령에 의해 비토됨)
제7절. 지상권
제8절. 선매권
제9절. 건축권의 비용 판정
제10절. 합작 도시 운영
제11절. 건축권의 이전
제3장 마스터플랜
제4장 도시의 민주적 행정
제5장 일반 조치

21) 브라질 「도시법」의 전문은 http://www.polis.org.br/obras/arquivo_163.pdf에서 볼 수 있다.

2) 도시권 현장 제정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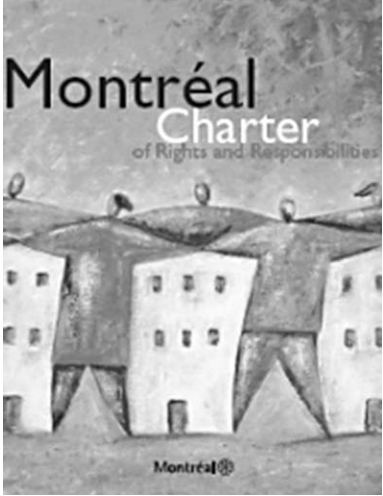
브라질의 「도시법」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도시 권리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담은 현장 제정 운동도 개별 도시 차원, 도시들의 연합 차원, 유럽연합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 리옹과 낭트,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워싱턴 주의 유진, 호주의 스톨링턴 등이 이러한 도시권 현장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들로서 자기 도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시권 개념을 널리 확산하며, 이와 관련된 도시 간 협력 증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²⁾

개별도시 차원에서 도시권을 담은 현장을 제정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몬트리올이다.²³⁾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현장(The Montré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현장은 몬트리올의 시민사회와 도시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협정을 제정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2002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5년 시의회에서 승인되고 2006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현장 제1조에는 “도시는 삶의 공간이며, 도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 관용, 평화, 포용, 평등의 가치가 모든 시민 사이에 증진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현장에는 도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공공 생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상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2) 몬트리올이나 바르셀로나 등에서 도시권 운동이 활발한 이유는 이곳 시민의 개방성과 의식 수준이 높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또 확증은 없지만 이들 도시가 소속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국민국가의 시민권보다 국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는 도시권이 강조되는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23) 몬트리올 현장의 전문은 http://ville.montreal.qc.ca/pls/portal/docs/page/charte_mt1_en/media/documents/charte_droits_en.pdf에서 볼 수 있다.

<표 2>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구성 체계

전문	
제1부 원칙과 가치	
제2부 권리와 책임, 실행 약속	
제1장. 민주주의	
제2장. 경제와 사회생활	
제3장. 문화생활	
제4장. 여가·육체 활동과 스포츠	
제5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6장. 안전	
제7장. 도시 서비스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4부 최종 규정	

한편 개별 도시 차원을 넘어서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도시권을 보장할 것을 다짐하는 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이다. 이 헌장은 바르셀로나 시가 주관한 1998년 유엔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처음 발의된 것으로, 여기에 관심 있는 도시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준비 작업을 거쳐 2000년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 유럽의 350개 이상 도시들이 비준하고 있다. 이 헌장의 주요 내용은 1948년의 유엔인권선언 및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인권 보호에 있어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헌장의 제1조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

1. 도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집합적 공간이다.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사회적·생태적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가진 동시에 연대의 의무가 있다.
2. 도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거주자 모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존중해야 한다.

이 헌장의 구성 및 체계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에서 보듯이 이 헌장은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제1조에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는 도시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the city) 측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⁴⁾

<표 3>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의 구성 체계

제1부 일반 조항

-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
- 제2조 권리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
- 제3조 문화, 언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 제4조 가장 취약한 집단 및 시민의 보호
- 제5조 연대의 의무
- 제6조 국제적 도시 협력
- 제7조 보충성의 원칙

제2부 도시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제8조 정치적 참여의 권리
- 제9조 결사 집회 시위의 권리
- 제10조 개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 제11조 정보에 대한 권리

제3부 도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12조 사회 보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권리
- 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
- 제14조 노동에 대한 권리
- 제15조 문화에 대한 권리
- 제16조 가정에 대한 권리

24)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전문은 <http://www.comune.venezia.it/flex/cm/pages /ServeBLOB.php/L/EN/IDPagina/2198>에서 볼 수 있다.

제17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18조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조화로운 도시 발전에 대한 권리
제20조 도시에서 이동 및 평온에 대한 권리
제21조 여가에 대한 권리
제22조 소비자의 권리
제4부 민주적 지방 행정과 관련된 권리
제23조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24조 개방성의 원칙
제5부 도시에서 인권의 실행을 위한 기제
제25조 정의의 지방행정
제26조 도시 정책
제27조 예방 수단
제28조 조세와 예산 기제
최종 조항
현장의 법적 의의와 적용을 위한 기제
부칙

한편 전 세계 차원에서 도시권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현재 두 군 데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UNESCO, UN-HABITAT, 2009: 25~26). 이 두 움직임 모두 1948년 제정된 유엔인권선언의 내용을 도시적 맥락에서 확대하려는 운동의 일환이다. 그 중 하나는 가칭 「도시권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을 제정하려는 운동인데, 이는 자국에서 「도시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공헌한 브라질의 시민단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권 세계 헌장」의 추진 배경은 지금까지의 권리 선언이나 협약 제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목표는 브라질의 「도시법」처럼 도시권의 내용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세계적 차원에서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 헌장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에서 기존에 인정된 인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도시에 대한 권리, 즉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

<표 4> 도시권 세계 헌장(2005년 현재 협의안)

<p>전문</p> <p>제1부 일반 조항</p> <p>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p> <p>제2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원칙과 전략적 기초</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시의 시민권과 민주적 관리의 완전한 실행2. 도시와 도시 토지의 사회적 기능3. 평등과 차별금지4.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과 집단에 대한 특별 보호5. 민간 부문의 사회적 의무6. 연대 경제(Solidary Economy) 및 누진세 정책 촉진 <p>제2부 시민권 실행 및 도시의 계획 생산 관리에 대한 참여 권리</p> <p>제3조 도시의 계획과 권리</p> <p>제4조 거주자의 사회적 생산</p> <p>제5조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p> <p>제6조 공공 정보에 대한 권리</p> <p>제7조 자유와 고결</p> <p>제8조 정치적 참여</p> <p>제9조 결사, 집회, 표현 및 도시 공공 공간의 민주적 이용에 대한 권리,</p> <p>제10조 정의에 대한 권리</p> <p>제11조 공공 안전 및 평화, 연대, 다문화 공존에 대한 권리</p> <p>제3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에 대한 권리</p> <p>제12조 물에 대한 권리 및 가정과 도시 공공 서비스의 접근과 공급에 대한 권리</p> <p>제13조 공공 교통과 도시 이동성에 대한 권리</p> <p>제14조 주택에 대한 권리</p> <p>제15조 일에 대한 권리</p> <p>제16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p> <p>제4부 최종 조항</p> <p>제17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증진, 보호,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p> <p>제18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수단</p> <p>제19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위반</p> <p>제20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요청</p> <p>제21조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과 관련된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의 의무2.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3. 의회 의원들의 의무4. 국제기구의 의무
--

속에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usufruct)’²⁵⁾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권리를 요구하지는 것이다(UNESCO, UN-HABITAT, 2009: 26). 또한 이러한 권리는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의 법적 권리이자 집합적 권리이어야 하며, 이를 법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법률제소권(locus standi)’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정의의 촉진, 진정한 민주 질서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Fernandes, 2007: 216).

위의 움직임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도시권 세계 현장 논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이미 도시 권리에 대한 상당한 의식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도시들의 시장 연합체가 주도하는 모임이다. 앞서 언급한 움직임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면, 여기에서는 ‘도시에서의 인권’을 강조한다. 이 모임의 목표는 가칭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 도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이 함께 협력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된 이 ‘헌장-의제’ 초안에는 인간 생활의 고결함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아홉 가지 권리와 그 구체적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들은 이 두 흐름이 각각 제안한 헌장의 구성 체계이다.²⁶⁾

25) usufruct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이익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용익권(用益權)이라고도 불린다.

26)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도시권 세계 헌장> 전문은 http://portal.unesco.org/shs/en/ev.php-URL_ID=8218&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에서,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 전문은 <http://www.spidh.org/en/the-charter-agenda/index.html>에서 각각 볼 수 있다.

<표 5>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2008년 현재 협의안)

<p>전문</p> <p>일반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목적B. 적용 범위C. 가치와 원칙 <p>제안된 권리(단기, 중기 행동계획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시에 대한 권리2. 참여 민주주의 권리3. 도시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4. 아동의 권리5. 기초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리6. 교육·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7. 주택과 거처에 대한 권리8. 물·에너지·식량에 대한 권리9. 환경·공공 교통·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권리 <p>최종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X. 지구적 헌장-의제의 채택, 각 도시에서 집행 혹은 승인Y. 적용 기제Z.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증진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

이 외에도 인권과 관련된 국제 헌장 제정 운동으로 2006년 유럽연합에 속한 각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유럽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Equality of Women and Men in Local Life)」이 있다. 또 1990년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논의가 출발하여 1994년 제정된 「교육도시 헌장(Charter of Educating Cities)」은 도시거주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증진, 문화적 다양성, 도시 간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가입하고 있다.

3) 유엔 도시권 프로젝트

2005년부터 UN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UN-HABITAT)는 공동으로 도시권 개념에 입각한 도시 정책들을 소개 보급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권에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현재 각 도시나 국가에서 도시 권리와 관련된 제도나 경험, 그리고 도시 권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나 수단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널리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논의 주제였던 인권을 도시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야 하고, 누구의 권리를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도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UNESCO, UN-HABITAT, 2009: 27~35).

첫째, 지방 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이다. 좋은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도시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다. 도시에서 주변적 취급을 받는 집단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을 품위 있고 당당한 존재로 인정하지는 것으로, 특히 여성, 국외 이주자, 노동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조한다. 셋째,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자유이다. 여기에서는 인종주의 반대와 종교적 자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존을 강조한다. 넷째, 도시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다. 거주자의 자유와 선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과 같은 도시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7)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는 UNESCO, UN-HABITAT(2009) 및 UNESCO, UN-HABITAT, ISS(2006)에서 정리되어 있다.

4) 우리나라의 도시권 관련 운동

우리나라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온 많은 이농민들은 대도시 주변에 무허가정착지를 형성하면서 삶의 거처를 마련했다. 도심 재정비, 도로 건설, 중산층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정착지의 강제 철거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곳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철거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철거반대 투쟁의 성과가 축적됨과 동시에, 세계주거회의(Habitat)에서 논의된 주거권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²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주도한 곳은 ‘한국도시연구소’이다. 도시빈민 운동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주거권에 대한 꾸준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주거권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²⁹⁾ 사회 운동 진영에서는 과거의 한시적 철거운동 중심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을 운동의 목표로 삼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런 실천 운동의 성과로 우리나라 「주택도시관련법」에 주거권 내용을 담은 일부 조항들이 첨가되었다. 또 최근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부터 ‘녹색교통운동’과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의 시민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행권 확보 및 보행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들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중에서도 이동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인 보행의 권리아말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여기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 대항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과 보행권

28) 주거권에 대한 개념 및 유엔의 주거권 증진 노력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일하던 서종균·김수현(1996)의 연구가 있다.

29)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2004, 2005) 참조.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로 국적 없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고, 지방선거에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영주권자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표권 말고는 다른 정치적 권리를 거의 누릴 수 없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도시 정치에 참여할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도시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물론 도시에서의 권리 개념도 제대로 소개되거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도시권 운동의 의의와 시사점

1) 도시권 개념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지금까지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을 살펴보았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철학적, 정치적 개념인 동시에 급진적인 실천적 함의를 띠고 있다. 그래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사회운동의 구호가 되기도 했고, 실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구체적인 법적 형태를 띠거나 도시 정책의 내용으로 스며들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퍼셀이 언급한 대로, 또 하비가 부연 설명한 대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도전하는 개념이다. 지난 두 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도시 공간이

자본 축적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교환가치를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 사유재산권보다 전유의 권리를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자본과 대항하는 것이다. 만약 참여의 권리를 통해 도시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결정과 생산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단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Purcell, 2003: 578). 즉,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구나 서구 선진국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실천 내용은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실천 운동에서는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보다 온건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온건한 해석을 대표하는 것이 UN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의 도시권에 대한 설명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도시권 개념이 급진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온건한 내용들이다.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의 도시권 해석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UNESCO, UN-HABITAT, 2009: 36).

첫째,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는 ‘도시에서의 권리(rights in the city)’와 다르다. 이것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거주자와 지역사회—여성이건 남성이건, 기존 거주자건 신규 이주자건—도시 생활의 혜택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의 책임성도 동시에 부여한다.

둘째, 도시행정의 투명성·형평성·효율성이 중요하다. 도시 정부는 도시 빈곤과 배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정부와 주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의 내용은 정부가 효율적이고 평등한 서비스 공급과 자원 할당을—특히 노약자, 장애인, 이주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보장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셋째, 도시에 대한 권리의 핵심은 지역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존중이다. 도시 정부는 시민의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를 통한 대화와 시민의 권능부여(empowerment)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넷째,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다양성 인식이 중요하다.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이고 도시에 대한 권리는 경제 및 사회생활의 다양성을 포괄한다. 오늘날 다문화 도시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학습을 증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빈곤, 사회적 배제, 도시 폭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빈곤 완화 및 도시 빈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을 포괄한다. 무허가 정착촌에서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도시의 공공·사적 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 거리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등이 인권의 증진에 필요한 것들이다.

끝으로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도시권 패러다임이 서로 상이한 국가적·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철학은 같다고 한다. 그 철학은 모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생활의 완전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도시권 개념의 유용성과 과제

도시권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문자 그대로 ‘도시’와 ‘권리’이다. 따라서 도시권 개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라는 범주의 유용성을, 이어서 도시라는 범주의 유용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실천적 의미에서 권리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사회 투쟁의 조직 원리로서 권리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마르크스는 권리는 권력—국가 권력 혹은 탈법적 위협—에 의해, 뒷받

침되는 정도만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엥겔스 역시 권리에 관한 이론은 사회 경제 발전 단계의 산물, 특히 지배계급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즉 권리 개념은 계급과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권도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또한 “쇠사슬밖에 잃을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는 더욱 평등한 사회, 보편적 인권의 이상이 제대로 유지되는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Ishay, 조효제 역, 2005: 233~235).

하비의 해석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결코 권리의 유효성을 완전히 포기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엄격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권리 개념이 부르주아 제도에 포획된 것이고, 따라서 권리와 관련된 정치를 하려는 것은 순전히 개량주의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또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권리나 보편성 개념이 잘못된 계몽주의 사상의 서자에 불과하다고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억압과 지배의 수단이 되었는지, 또 18세기 자유주의 개념 속에 얼마나 깊게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비는 개량주의와 혁명 사이의 구분이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구분이 그리 명료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본다(Harvey, 2000: 86). 즉 인권의 보편성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실천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점차 그 내용이 심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권 혹은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헨더슨과 워터스톤도 최근 편집한 『지리적 사상 - 실천적 관점』이라는 책에서 지리적 관점을 가진 실천 목표와 영역으로 권리, 정의, 윤리 세 가치를 들고 있다(Henderson & Waterstone, 2009).

다음, 권리의 영역으로서 도시라는 범주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선진국 인구의 대다수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는 매우 중요한 인간 삶의 공간이다. 또 마

르크스나 르페브르가 언급했듯이 도시는 사회 변혁의 실천 장소로서 유용하다. 그렇지만 도시 권리만 주장된다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권리에서 배제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유엔에서 말하는 정주(Habitat) 개념이나 주거권의 개념이 도시권보다 더 넓은 인간 생활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퍼셀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넘어 그 공간적 범위를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보다 일반적인 정주에 대한 권리로, 모든 지리적 맥락에 있는 거주자 전체가 그들 자신의 일상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rcell, 2003: 583). 그렇지만 이미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도 이런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르페브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인간 사회가 도시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르페브르에게 있어서 도시란 단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세계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Lefebvre, 1996: 194). 즉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물리적 공간인 도시에 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제한된 권리나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도시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인권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영역적 틀 속에서 시민권으로서 구체화되었다. 즉 ‘인간의 권리’에서 ‘인간’은 ‘시민’으로서만 존재했고,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실현되었다. 하지만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홍태영, 2009: 81).³⁰⁾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고 외

30) 이 점에 대해서는 홍태영의 다음 설명이 도움이 된다.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공간과 그들의 정치 역시 국민국가적 틀을 넘어서 진행되는 것이다. …… 근대의 민주주의가 일국적 경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물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 인권의 정치를 사고하는 이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근대의 ‘동일성의 원리’가 아니라 ‘차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허구적 보편성을 극복하는 보편성이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운동으로서 존재하고 실현되는 보편성이다”(홍

국민 이주권이 늘면서 국민국가라는 영역적 틀 속에 한정된 시민권 개념도 이제 달라질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도시 변화 연구의 권위자인 사센(Sassen)은 전지구화가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권력, 즉 국가 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때 인권 관련 국제조약들도 각 국가 내부의 시민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권은 국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에 따라서 국민 주권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것이다(Sassen, 1996, 1998, 2006).

도시권은 설령 국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도시거주자와 도시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까지 인권 보장의 담지자는 국민국가였다. ‘도시에서의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도시 차원에서도, 즉 지방정부나 도시정부가 기존의 인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도시에 대한 권리도, 다시 말해 도시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도시행정과 도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를 만들고 생산하는 권리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주권 개념의 새로운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아감벤(Agamben)의 논의에 비추어본다면, 도시와 도시 거주자에게 초점을 맞춘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나 지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와 같은 법의 공백상태, 즉 ‘예외상태’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nuda vita)’들을 누락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³¹⁾ 하지만 아감벤이 『인권을 넘어서』라는 짧은 글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시민권이 팔레스타인 난민 같은 국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배제시키고 있

태영, 2009: 96~97).

31) 아감벤의 이론과 저서들이 최근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감벤의 저서 중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으로는 Agamben, 1995(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Agamben, 2003(김항 옮김, 2009, 『예외상태』); Agamben, 1993(김상운·양창렬 옮김, 2009,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들』)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수록한 참고문헌 참조.

다는 점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족이 한 도시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 예루살렘이 처한 난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민국가가 모인 유럽이 아닌, 상호호혜적 외부 관계를 가진 고대 도시국가 역할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Agamben, 2000; 김상운·양창렬 역, 2009), 아감벤의 논의와 르페브르의 도시권 논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나 모순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도시와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는 윌리엄 미첼은 정보통신의 발전이 용도별 도시공간의 격리를 초래한 전통적 조닝(zoning) 체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르페브르가 그토록 비판한 ‘차별적이고 격리적’인 도시 조직이 사라지고, 르페브르가 중시한 ‘공간의 다양성’과 ‘기능적 구분의 철폐’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Mitchell, W., 2003: 165). 하지만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인종 간의 주거지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술발전의 영향만으로 르페브르가 언급한 공간적 다양성이 저절로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오랜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인권 탄압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 등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졌고,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탄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인권 발전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노동권, 주거권 등과 관련된 11개 사항의 인권 침해에 대해 권고했다. 그런데 2008년에는 훨씬 더 늘어난 30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 중 6개 사항은 2001년에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사항들이다.³²⁾

32) 이하 《한겨레신문》, 2009년 11월 26일 인터넷판 “한국정부, 유엔 권고 8년 동안 ‘콧방귀’” 제하의 기사내용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 상황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권은 물론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자유권마저 침해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2009년 초 용산참사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개발사업과 강제퇴거, 그로 인한 주거권과 생존권 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김용창, 2009; 박래군, 2009). 촛불 시위 자들에 대한 서울 도심 광장의 사용 금지 역시 도시권의 관점에서 보면 참여에 대한 권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앞서 살펴본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세계 헌장」 초안에서는 제9조에 “결사 집회 표현의 권리 및 도시 공공공간의 민주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은 집회 결사 표현의 권리가 있고 도시는 이를 위해 공공공간을 제공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지났고, 르페브르가 처음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적 권리로 구현되고 있고, UN 산하기구가 앞장서서 이를 현실 도시 정책에 적용하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한 심의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임시이주 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30개 사항을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사회권 규약 가입국의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에 대한 이번 심사는 2001년에 이어 8년 만에 이뤄졌다.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공무원·교사 등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11개 권고 사항 가운데 이런 6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올해도 다시 권고를 받은 것이다. 2001년에는 우려사항에 그쳤지만, 더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해 이번엔 권고사항이 된 것도 있다. 2001년 당시 유엔 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기준이 너무 엄격해 많은 빈곤층이 배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이례적으로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 실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홈리스,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 마련도 촉구한다’며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현실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그리고 도시 권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연구자들도 인권과 도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 Abstract

The evolving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and related social movements

Kang, Hyun-Soo

Since the French urbanist Henri Lefebvre first promoted the idea of ‘the right to the city’, this idea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social action groups who seek to better empower urban dweller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has provoked renewed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bate on urban politics. Also, several forms of social actions inspired by this concept have risen up and achieved some positive results, such as new statutes and regulations.

Keywords: the right to the city, Henri Lefebvre, human rights, citizenship, urban politics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국제인권장전』. 유엔인권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200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 현황조사(200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_____. 2005.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남주. 2000.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 비평》, 2009년 여름호.
- 노대명. 2000.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 로브쉴즈, 조명래. 2000. 「앙리 르페브르-일상생활의 철학」.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14호.
- 류은숙. 199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9호, 105~126쪽.
- _____. 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 박래균. 2008. 「도전받는 세계인권선언」. 《월간 말》, 2008년 12월호(통권 270호), 142~145쪽.
- _____. 2009. 「‘용산 참사’로부터 생각하는 인권」. 《실천문학》, 2009년 여름호(통권 94호), 216~223.
- 박래균. 2006. 「자본주의 국가를 공간적으로 다시 읽기」.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26호, 4~8쪽.
- 박병도. 2006. 「연대의 권리, 제3세대 인권」.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 박영민. 1997. 「르페브르의 실천전략과 사회공간」.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9호.
- 서종균·김수현. 1996. 「주택정책과 주거권, 주거권운동」. 한국도시연구소 발간. 《도시와 빈곤》, 통권 20호.
- 이봉화·조영미. 2007. 「여성의 도시권을 통해본 도시 여성 정책전망—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3차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흔들리는 가부장제 새로운 젠더 질서를 향하여』, 208~221쪽.
- 이현재. 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 생산을 위한 투쟁」. 한국사회이론학회 발간. 《사회 이론》, 2008년 봄·여름호, 111~131쪽.
- 장세룡.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부산 경남

- 사학회 발간. 《역사와 경계》, 58호, 293~324쪽.
- 장세훈. 1999. 「제3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한국과 브라질의 도시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비교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발간. 《도시연구》, 제5호, 81~151쪽.
- 한상희. 200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 홍태영.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한국정치사상학회 발간.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80~100쪽.
- Agamben, G. <English translation, translated by Vincenzo Binetti and Cesare Casarino>
2000. "Beyond Human Rights" in *Means without End Notes on Politics*(원제: 1996. *Mezzi senza fine: Note sulla politica*) Univ. of Minnesota Press, 김상운·양창렬 옮김.
2009. 「인권을 넘어서」.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들』. 난장.
_____. 1995.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Einaudi. 박진우 옮김.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 Agamben, G. 2003. *Stato di eccezione*. Bollati Boringhieri. 김항 옮김. 2009. 『예외상태』. 새물결.
- Brenner, N. 1999. "Globalisation as Reterritorialisation: The Re-scaling of Urban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Urban Studies*, Vol.36, No.3, 431~451.
- Dikeç, M.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3, pp. 1785~1805.
- _____. 2002. "Police, politics, and the right to the city." *Geojournal*, Vol.58, No.2~3, pp. 91~98.
- Douglas M. & Friedmann J. (eds.) 1998.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Academy Press.
- Fernandes, E. 2007. "Constructing the 'Right to the City' in Brazil." *Social and Legal Studies*, Vol.16, No.2, pp. 201~219.
- Friedmann, J. 1987. "The right to the city." *Development Dialogue*, Vol.1, pp. 135~151(같은 내용으로 Friedmann, J. 1992. "The right to the city." *Society and Nat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1, No.1, pp. 71~84에 다시 실림).
- _____. 2002. *The Prospect of C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최병두 옮김.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_____. 2003. "Debates and developments: the right to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4), pp. 939~941.
- _____.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September-October 2008.
- _____. 2000. *Spaces of Hop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최병두 외 옮김.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 Henderson, G. & Waterstone, M. (ed). 2009. *Geographic Thought: A Praxis Perspective*. Routledge.
- Holston, J. 1999. “Spaces of insurgent citizenship.” Holston, J. 1999 (ed.). *Cities and Citizenship*. Durham: Duke Univ. Press.
- Hunt, L. 2007.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W. W. Norton & Co. 전진성 옮김. 『인권의 발명』. 돌베개.
- Ishay, M. 2004.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조효제 옮김. 2005.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 Isin E. F. 2000. “Introduction: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city.” Isin E. F. 2000 (ed.).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Routledge.
- Kofman, E. & Lebas, E. (eds. and translators).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Lefebvre, H. 1973. *La survie du capitalisme: la re-production des rapports de production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76. (Translated by Bryant, F.)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London: Allison & Busby.
- _____. 1968.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박정자 옮김. 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주류·일념.
- _____.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6. *Right to the City*. Kofman, E. & Lebas, E. (eds. and translators)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_____. 1970. *La révolution urbaine*. Paris: Gallimard. <English translation> 2003. (Translated by Robert Bononno, Foreword by Neil Smith) *The Urban Revolu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73. *Espace et politiqu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6. *Space and Politics*. Kofman, E. & Lebas, E. (eds. and translators)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_____.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1.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 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 _____. 1979. “Space: Social Product and Use Value.” in Freiberg, J. W. (ed). *Critical Sociology: European Perspectives*, New York: Irvington, pp. 285~295.
- McCann, E. J. 2002. “Space,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city: a brief overview.” *Geojournal*, Vol.58, No.2~3, pp. 77~79.
- Merrifield, A. 2002. *Metromarxism: A Marxist Tale of the City*. Routledge. 남창수·김성희·

- 최남도 옮김. 2005.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서울.
-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Mitchell, W. 2003. *Me++: The cyborg self and the networked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 Pu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Vol.58, pp. 99~108.
- _____.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7, No.3, pp. 564~590.
- Sassen, S. 1996. *Losing Control? Sovereignt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_____.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Press.
- _____. 2006. *Territory, Authority, Rights: From Medieval to Global Assemblages*. Princeton Univ. Press.
- Soja, E. W.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 Basil Blackwell.
- UNESCO, UN-HABITAT. 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Paris, UNESCO, MOST.
- UNESCO, UN-HABITAT, ISS. 2006. *International Public Debates: Urban Polices and the Right to the City*. Paris, UNESCO, MOST.
- United Nations. 2005.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 옮김. 200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논문접수일: 2009. 10. 21

논문수정일: 2009. 11. 21

게재확정일: 2009. 11. 30